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제793호

2018. 03. 22.(목)
정책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8년 03월 14일

○ 회부일자 : 2018년 03월 15일

다. 상정일자 : 2018년 03월 22일

○ 제36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이양섭 의원)

가. 제안사유

- 핵가족화의 가속화로 인하여 고독사를 맞이하는 노령자 등이 증가함에 따라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웰다잉 문화조성 등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 정의 (안 제2조)
-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사업 규정 (안 제5조)
-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도민 대상 홍보활동 규정 (안 제6조)
- 시·군,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노력 규정 (안 제9조)

3. 검토보고 요지 (정책복지 수석전문위원 한철우)

가. 제출배경

- 본 조례안은 도민 각자가 스스로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체적인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문화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교육 및 홍보활동, 관련 업무의 민간위탁 등 필요 사업 진행을 위한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2조에는 “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을 죽음을 스스로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웰다잉”이라는 외래어를 사용한 것은 서울, 부산, 대전, 경기 등 타 시·도 조례에서 통용되고 있고, 해당 의미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규정화된 적절한 용어가 없어 불가피하게 사용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4조에는 도지사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도민의 존엄한 죽음,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조사결과가 제5조에서 규정한 사업추진의 기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와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안 제5조에는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 내용을 기술하고, 이를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부 또는 보조 시 해당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조항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 안 제6조에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해 도민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의 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도민 홍보를 통한 인식 확산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 노력이 필요함.

- 안 제7조에는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업무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안 제10조에는 시·군,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해당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민간영역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사업의 전문성 및 질적 담보를 꾀할 수 있을 것임.

다. 종합의견

- 2017년 8월부터 제정·시행 중인 상위법령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서 웰다잉 문화의 핵심인 죽음 앞에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문화적 토대 구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조례안의 입법 목적 및 내용은 상위법령에 부합된다 할 수 있으며,
-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죽음’이란 개념에 대해 부정적이고 거부감을 느끼는 경향이 잔존하고 있는 바, 인간답고 가치 있는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웰다잉 문화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수 정 안 요 지

가. 수정이유

- 내용 상 중복 조항 삭제

나. 수정 주요내용

- 제7조(위탁) 조항 삭제

7.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8.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10.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한 수정안 1부.
- 「충청북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1부.

충청북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17년 3 월 22 일

제안자 : 이양섭 의원 등

1. 수정이유

- 안 제7조의 사업 위탁에 관한 규정이 안 제5조제2항의 사업 추진에 대한 비용 지원 규정과 중복되는 바 이를 삭제함.

2. 수정 주요내용

가. 안 제7조를 삭제함

나. 안 제7조 삭제에 따른 다음 조 번호를 수정함.

- 안 ‘제8조’ → ‘제7조’, ‘제9조’ → ‘제8조’, ‘제10조’ → ‘제9조’

충청북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북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를 삭제하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9조까지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7조(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따른다.	<u>〈삭 제〉</u>
제8조 (생 략)	제7조 (현행 제8조와 같음)
제9조 (생 략)	제8조 (현행 제9조와 같음)
제10조 (생 략)	제9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충청북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양섭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17년 3월 14일
발의자 : 이양섭, 김영주, 박우양,
박종규, 윤은희, 이언구

1. 제정이유

- 핵가족화의 가속화로 인하여 고독사를 맞이하는 노령자 등이 증가함에 따라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가.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 등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 정의 (안 제2조)
- 나.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사업 규정 (안 제5조)
- 다.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도민 대상 홍보활동 규정 (안 제6조)
- 라. 시·군,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노력 규정 (안 제9조)

3. 의안전문 : 불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불임
- 나. 입법예고 :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 2018 - 19 호
- 다. 협의 :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
- 라. 비용추계 :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불임

충청북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Well-Dying) 문화구성” (이하 “웰다잉 문화구성”이라 한다)이란 죽음을 스스로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임종과정”이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호스피스 이용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인식조사) 도지사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도민의 존엄한 죽음,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 등) ① 도지사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연구·개발 사업
 2. 유언장·자서전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 사업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 사업
 4.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 사업
 5. 웰다잉 교육 지도자 육성 사업
 6.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 사업
 7. 건전한 임종 문화 조성 사업
 8.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6조(홍보) ① 도지사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도민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웰다잉 문화조성과 관련하여 홍보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제7조(호스피스의 날) 도지사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군,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제4항 1호

○ 사 유

- 이 조례는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

○ 작성자

-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장 김 낙 주

관계법령 발췌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종과정“이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
- 2.~ 8. (생략)
9.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호스피스이용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호스피스의 날 지정) ① 삶과 죽음의 의미와 가치를 널리 알리고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호스피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둘째주 토요일을 “호스피스의 날“로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